

농 정 소 식

정부의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지원계획('95)

I. 전통식품개발 및 산지일반가공 사업 지원

1. 목 적

- 가. 우리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로 대외경쟁력 강화
- 나. 성출하기에 원료농수산물의 수매 및 가공처리로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기여.
- 다. 전통식품의 산업화로 고유식생활문화의 계승발전
- 라. 농외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

2. 추진방향

기본방향

- 농어민 생산자단체를 산지가공산업의 주체로

나. 연차별 투자계획

육성

- 농수산물가공으로 부가가치를 농어민에게 환원시키고 시장경쟁력 강화
- 전통식생활문화를 정착시키고 전통가공식품을 수출산업으로 육성

가. 사업목표 및 계획

- 국내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업을 하고자하는 농어민, 생산자단체와 산지일반업체에 시설비, 포장개선비 및 원료구입자금 지원
- 전국 시·군·읍면별, 주산단지별로 지역특산물 및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을 우선으로 2004년까지 2,000개소의 가공공장 설치

(단위 : 개소, 억원)

구 분		'93년까지	'94	'95	'96 ~ '98	'99 ~ 2004	계
사 업 비	사 업 량	789	117	160	575	359	2,000
	계	1,390	432	914	4,110	24,400	31,246
	국고보조	231	186	297	1,205	6,500	8,419
	용 자	799	154	374	1,913	11,880	15,120
	자 담	360	92	243	992	6,020	7,707

3. 지원대상

가. 대 상

전통식품개발 사업	산지일반가공사업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며 농어촌지역에서 “농수산물가공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”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식품의 가공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마을공동(농어가 5호이상) 및 생산자단체 ○ 기 지정된 특산단지 지정업체(식료품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농어촌지역에서 농수산물가공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(조합원 100명 이상의 영농조합법인 포함) 및 재촌 비농가 또는 일반업체 ○ '94년도까지 추진하던 우리밀가공사업, 감자가공사업, 팥옥수수가공사업, 쌀가공식품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일반업체.

나. 지 역

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농어촌지역 중(전국의 군지역과 시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)도시계획법, 수도권정비계획법,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규의 제한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지역.

- 식품위생법등 각종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용이한 품목
- 기타 농림수산부 장관이 가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품목
- ※ 주류는 주세법에 의거 제조면허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대상품목에 포함

다. 품 목

- 농수산물가공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농림수산부 장관이 전통식품으로 지정한 품목(전통식품개발사업에 한함)
- 국내산 농수산물로써 원료확보가 용이한 품목
- 부가가치가 높고 경쟁력확보가 가능하며 유희동력을 활용하여 가공할 수 있는 품목
- 대규모 판매처, 지역단체, 기관등에 판로확보가 용이한 품목
- 원료 또는 제품의 보관, 수송이 용이한 품목

라. 기 타

- '95년말까지 완료가능사업
- 생산자단체는 군지부 및 도지회와 사전협의하여 반드시 조합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
- 영농조합법인은 사업계획에 대한 총회의결을 거쳐 의사록 첨부하여 신청.
- 동일지역내, 동일품목 또는 유사품목(동일원료)으로 판단되는 품목은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상에서 제외
- 전통식품개발사업은 공동출자, 공동생산, 임가공, 취업형태로 참여하고 공동운영 또는 단독경영도 가능.

4. 참여형태별 지원규모 및 기준

가. 지원규모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지원 기준액	지원기준			비고	
		보조	융자	자담		
전통식품	마을공동	180	50%	30%	20%	
	생산자단체 (영농조합법인)	200	"	"	"	(조합원 50인 미만, 출자금 5천만원 이상)
산지	영농조합법인	500	"	"	"	조합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, 출자금 2억원 이상
		1,000	"	"	"	조합원 100인 이상 출자금 3억원 이상
가공	단위조합	1,000	"	"	"	특수조합 포함
	군단위 연합	3,000	40	40	20	"
	도단위 연합	5,000	30	40	30	"
	일반업체	1,000	-	70	30	재춘비농가 포함

나. 지원부분

- 건물 및 시설 : 공장, 창고, 저온저장고, 기타 부속건물, 전기시설, 오폐수처리시설 등
- 가공기계류
- ※ 사업부지 및 차량구입비용은 제외

관창고, 저온저장고, 오폐수처리시설 등

- 지원회수 : 1차에 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수출선이 확보되어 활발히 수출되거나 내수분야가 유망한 업체는 2차까지 추가지원 (2차 추가지원시는 융자지원만 가능)

다. 융자조건

- 농어민, 생산자단체 : 연리 5%, 3년거치 7년 상환
- 일반업체(재춘 비농가) : 연리 8%, 3년거치 7년 상환
- ※ 광역특수조합 또는 단위조합연합이 사업주체인 경우 시설비 3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에 대하여는 전문연구기관의 사업타당성검토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규모를 적용

라. 추가지원

- 분야 : 공장증설, 시설현대화, 원료 및 제품보

5. 도별·사업별 추천한도

구분	추천사업수		계
	경기등8개도	제주	
○ 전통식품개발 사업	12	3	98
○ 산기일반가공사업	10	4	84
- 생산자단체	6	2	50
- 일반업체	4	2	34
※ 쌀가공식품 시설 현대화	2	-	16

6. 지원대상업체 추천 및 신청

가. 지원대상자 지정신청 → 관할 시, 군

나. 지원지정후보자 선정제출 : 시장·군수 → 도지사

다. 지원대상자 추천 : 도지사 → 농림수산부장관

라. 지원대상자 지정 및 통보 : 농림수산부장관 → 도지사

7. 자금지원

가. 자금지원계획

- 지원부문 : 시설자금(건축 및 기계설비)
- 재 원 : 농특회계
- 용자취급기관 : 농·수·축협중앙회(계통조합)

나. 보조금 지급

- 보조금 배정 : 농림수산부장관 → 도지사(시장, 군수)
-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
 - 신청 : 사업자 → 시장, 군수 → 도지사
 - 결정 : 도지사(시장, 군수) → 사업자

II. 포장개선사업 지원

1. 지원방향

- 전통식품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낙후된 포장디자인과 용기구입에 필요한 자금지원
- 수출용 포장디자인개발에 우선지원

2. 지원대상

- '89년 이후 정부지원 전통식품개발 사업체
- 산지일반가공 사업 지원업체중 생산자단체
- 특산단지 지정업체(식료품)중 사업성이 높은 단지

3. 지원기준

- 포장디자인 개발 : 업체당 2회까지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, 새로운 제품개발에 따라 디자인개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 할 수 있으며, 수출을 위하여 새로운 디자인개발이 필요한 경우 특별지원
- 포장재(유기)지원 : 업체당 1회에 한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, 새로운 제품개발에 따른 디자인개발로 인하여 포장재구입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 할 수 있으며, 수출용·포장용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지원

4. 지원규모

포장 디자인개발 및 용기구입자금으로 업체당 최고 30백만원을 기준 50%보조, 30%용자, 20%자담.

5. 연차별 투자계획

(단위 : 개소, 억원)

구 분	'93년까지	'94	'95	'96 ~ '98	'99 ~ 2004	계	
사 업 량	172	60	80	450	1,800	2,502	
사 업 비	계	30	18	24	135	1,800	2,007
	국고보조	15	9	12	68	900	1,004
	용 자	7	5	7	41	540	600
	자 담	8	4	5	26	360	403

6. 사업자 선정

- 자금수요파악 : 도지사는 업체별, 용도별로 자금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
- 자금지원계획 확정·시달 : 농림수산부장관은 예산범위내에서 각 도별로 조정한 후 지원계획을 확정하여 도지사에게 시달
- 사업자 선정 : 도지사는 자금지원계획 범위내에서 적격한 업체를 선정

7. 포장디자인개발 의뢰기관

- 한국식품개발연구원,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
-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포장 전문회사 신고를 필한 업체
-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장으로 부터 각대학 산업디자인학과 지도위원으로 위촉된 교수
- ※ 단, 수출을 위하여 현지에서 포장디자인을 개발하는 경우는 지원가능

8. 자금지원

가. 보조금 지급

- 보조금 배정 : 농림수산부장관 → 도지사

3. 지원기준 및 조건(지원자금 : 농안기금)

구 분	지원조건	용자한도	용자비율
○ 전통식품업체 - 마을공동 - 생산자단체	연리 5%, 2년 이내 "	1억원 이내 2억원 이내	원료구입 소요자금의 70% 이내 "
○ 특산단지(식품업체)	"	1억원 이내	"
○ 산지일반가공업체 - 생산자단체 - 일반업체	연리 5%, 2년 이내 연리 8%, 2년 이내	3억원 이내 "	" "

○ 보조금 신청 및 결정

- 신청 : 사업자 → 도지사(시장, 군수)
- 결정 : 도지사 → 사업자

나. 용자금 지급

- 재 원 : 농특회계
- 지원조건 : 연리 5%, 1년거치 4년상환
- 용자금배정 : 농림수산부장관 → 농협중앙회장

III. 가공원료자금 지원

1. 사업목적

- 농수산물 특성상 원료수매자금이 일시 집중됨으로써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정부지원 산지가공업체의 효율적인 육성과 성출하기 원료농수산물의 가격 안정에 기여.
- 시설자금과 함께 원료자금 지원으로 농어민 및 생산자단체등의 가공산업 경영개선

2. 지원대상 및 부문

정부지원 전통식품 및 산지일반 가공업체의 국내산 가공원료 구입자금